

춘천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4가단1005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변론 종결2024. 10. 8.

판결 선고2024. 11. 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H 대 238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16m²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강원 화천군 H 대 23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강원 화천군 I 지상 시멘트브릭조 함석,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88.66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D, E과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¹⁾ 다. J은 2023. 2. 11. 사망하였고(이하 J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 망인의 자녀들인 F, G가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m²(아래 지적현황측량결과도에서는 'ㄴ' 부분)를 침범하고 있다.

[지적현황측량결과도]

DIAGRAM: 지적현황측량결과도(이미지 생략)

2. 피고 C, D에 대한 판단

위 청구의 표시에 기재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 B, E, F, G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사이선말

별지

1) 피고 B 1/17 지분, 피고 D 8/17 지분, 피고 E 7/17 지분, J 1/17 지분